

제 617 호
1977. 8. 17

발행인: 서울특별시공 구자춘
편집: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보

-차례-

◎ 조례	
제 1179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화 추진에 따른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3
◎ 규칙	
제 1712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3
◎ 고시	
제 26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8
제 26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0
제 262 호 : 도시계획 미판지구 일부변경 결정	11
제 26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2
제 264 호 : 도시계획시설 (쓰레기및오물처리장) 결정및지적승인	13
제 26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4
제 267 호 : 도시계획시설 (공유구) 결정 및 지적승인	14
제 26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인가	14
제 26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5
제 27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6
제 27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지적승인	16
제 272 호 :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및지적승인	17
제 273 호 : 출장소 및 동정사위치 변경고시	(이면계속) ¹⁷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74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8
제 27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8
제 27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9
제 27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9
제 278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시행허가	20
제 279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지적승인	21
제 28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1
제 28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22
제 28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2
(◎) 공 고	
제 18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3
제 182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24
제 184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24
제 185 호 :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 공람공고	25
제 18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25
제 18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26
제 189 호 :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27
제 19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27
제 19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30
제 193 호 :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32
제 37 호 (종로구공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회계판계 공무원직인신조 공고	32
제 372 호 (중구공고) : 공인신조 공고	33
제 288 호 (성북구공고) : 직인신조 공고	34
제 31 호 (서대문구공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공인 (신조사용) 공고	34
제 26 호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공고) : 부정시험 행위자 명단	35
(◎) 사 명	35
(◎) 정 정	37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화추진에 따른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8월 17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79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체기업화
추진에 따른취득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화추진에 따른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8월 17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12 호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창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제안 제도에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도·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 및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체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p>②제 1 항 제 1 호의 「제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p>	<p>4. 실제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p>
<p>1. 「자유제안」이라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p>	<p>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견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2. 「지정제안」이라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p>	<p>6. 기타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것</p>
<p>3. 「직무제안」이라함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협력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장이 추천한 고안을 말한다.</p>	<p>제 4 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 3 조 (제안으로 볼수 없는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 5 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p>
<p>1.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p>	<p>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제 1 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 6 조 (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의견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2 장 제안심사위원회</p>
	<p>제 7 조 (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p>

지급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5. 기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 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제 1부 시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동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 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에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제 1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 9조의 규정을,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체택 및 시상 2. 창의의 실시범위, 실시기한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제 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 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③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 18 조 (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 1 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p>
<p>④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4 장 심 사</p>
<p>제 14 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p>	<p>제 19 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p>
<p>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심사기준 ②제 1 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p>
<p>제 15 조 (위원의 수당) 풍토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노력도 2. 완성도</p>
<p>제 16 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제 20 조 (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p>
<p>제 3 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 17 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p>	<p>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p>

<p>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계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p>	<p>서물특별시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p>	<p>제 23 조 (인사상의 특전) ① 시장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케 할 수 있다.</p>
<p>제 21 조 (계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계안의 채택은 종합소득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2) 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 의 명단을 작성하여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 4 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추정한다.</p>	<p>제 24 조 (부상) 시장은 제 22 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제 5 장 시 상</p> <p>제 22 조 (창안상) ①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계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한다.</p> <p>② 제 1 항의 각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금상은 1 창안당 6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 2. 은상은 1 창안당 40 만원 이상 60 만원 미만 3. 동상은 1 창안당 20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p>
<p>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 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p>	

4. 장려상은 1 창안당 2 만원이상
20 만원 미만

제 6 장 권리의 승계

제 25 조 (권리의 승계) 서울특별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 26 조 (승계의결정) ①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장으로부터 제 26 조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출원)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받은 (인계, 양여포함) 시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

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출원된 창안의처리) 제 28 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등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제 30 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 27 조에 제 27 조에 따른 창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창안의수정 및 보완) ①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다.

<p>(2) 제 1 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3)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32 조 (설시외주전) ①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시장을 주전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에 의하여 주전을 받은 자체 단체나 기관은 구제안의 실시여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의 모집한 제안 중 체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체택, 실시된 경우에는 시장은 제안자에 이 규정이 정하는 특전(시장, 특별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 등)을 줄 수 있다.</p> <p>제 33 조 (설시평가) ① 창안의 설시기준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전문기준, 또는 관계기관에</p>	<p>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 8 장 보 칙</p> <p>제 34 조 (보살) 제안의 체택으로 적합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기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p> <p>제 35 조 (비밀유지) 제안서도의 운영에 관한업무에 종사하는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36 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p> <p>부 칙</p> <p>(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서울특별시 제안규정은(훈령 제 359 호 72.8.11)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p> <p>(3) 이 규칙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평가중에 있는 제안 및 창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 및 창안으로 본다.</p>
---	---

37-10 제 617 호

시

보

1977.8.17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60호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영등포구청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규정 및 77.5.1자 서울
특별시 내부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경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7.

서울특별시장

구분	동글	유별	폭원	연장	시 접	총 접	비 고
기정	소고	1	10m	100m	신도림 907-35	신길동 448-8	
변경	"	"	"	"	"	신도림 908-2	위치일부변경
기정	"	2	8m	90m	구로 607-4	구로 620-2	
변경	"	"	"	"	"	"	위치일부변경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1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1977.4.1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1977.3.16)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
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8.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아동 192의 4의 11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입중, 고등학교 고지
조정

제 617 호

시
보

1977.8.17 37-11

3. 사업의 시행면적 : 23,378 평방미터 (7,072 평)	가. 사업의 착수일 : 시행허가일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93 외 9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봉수	나. 준공예정일 : 1977.10.3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다.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명세 : 별첨.
	별첨도면과 같음(도면생략)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용 권
도봉구	산2	임야	4,290 평중 1,140 "	2,713 경
미아동	산3-2	"	626 "	학교법인 신일학원
	산4-1	"	819 "	"
	산4-2	"	62 "	"
	산5	"	521 "	"
	산7-1	"	147.6 "	"
	149-2	대	187 "	"
	147	"	64 "	"
	163-6	"	311 "	"
	163-7	"	574 "	"
	192-4	"	967 "	"
	195-1	도로	80 "	"
계			7,072 "	

⑥ 서울특별시고시 제 262 호

도시계획 미판지구 일부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판지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 3. 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37-12 제 617 호

시 보

1977.8.17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8. 2. 서울특별시장
---	--

가. 미관지구 일부변경 결정조서

구분	순위	지구명	종별	기점	종점	연장(m)	비고
기정	26	노선미관지구	2종	동교동	수색동	5,400	도로양측12m
변경	26	"	"	남가좌동(사천교)	"	4,330	1,070m 축소
기정	34	"	4종	연대입구	연대입차교차	1,200	도로양측12m
변경	34	"	"	"	남가좌동(사천교)	2,270	1,070m 연장

*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6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호(77. 3. 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 사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8. 2.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6	40	신당5동287-30	신당5동286-41	
"	"	"	"	50	" 287-4	" 286-28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제 617 호 시 보 1977.8.17 37-13

⑤ 서울특별시고시 제 264 호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전설부
고시제41호(1977.3.16)의 권한

○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77. 8. 3.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마포구 상암동 482 일대 (남지도)	878.270 평	

별첨도면표지와 같음(도면 생략). 끝.

⑥ 서울특별시고시 제 26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12조와 전설부고시 제41
호(1977.3.16)의 권한 위임사항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도로 결정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77. 8. 4.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등급	통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첨	종 첨	비 고
신설	소로	3		6m	20m	마아동 829-2	수유동 482-10	

별첨도면표지와 같음(도면 생략). 끝.

1903

37-14

제617호

시

보

1977. 8. 17

◎서울특별시고시제267호

도시계획시설(공동구) 결정 및
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동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77. 3. 16)의 권한위임위탁에

○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설명	위 체	규 모	비 고
신설	공동구	중구서소문동 58-9 일대	B=2.2m, L=40m	중앙일보, 동양방송지 하공작물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268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125호('77. 4. 27)로 시설결정 및 고시제193호('77. 6. 11)로 지정 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 3. 2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관제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 강남구 가락동 58 외 1 외 3 필지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중학교 신설
- 사업규모 및 면적: 5,120평
-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사업설시계획인가증시
나.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1년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8. 위치도: 도면 생략.	

사용 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소재지	자 번	지목	지적	비 고
강남구 가락동	58-1	대	11,416.96평 중 4,390.62평 614.38평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58-3	대		"
"	56-4	도	118평	서울특별시
"	54-3	도	2평	"
"	계	4필지	5,120평	

⑥ 서울특별시고시제 26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186호(62.12.20)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8.3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의 위치: 중학동 드로
(한국일보사 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중학동도로
확장공사
- 사업 규모: [폭=중학동도로 확장공사
연장=5m → 10m 로 확장 290]
-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착수 및 준공 예정일: 1977.3.1 ~ 1977.12.30
-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사서

37-16 제 617 호 시 보 1977.8.17.

◎서울특별시고시제 27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77호(62.12.9)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 및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8.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마포구 공역동 438-2 ~ 용산구 원효로1가 25-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역동 ~ 원효로1가간 도로개설공사

○ 도로지적승인조서

3. 사업규모: 폭 = 28m
연장 = 1,47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차수 및 준공예정일: 1976.11.3
~ 19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토지조사

◎서울특별시고시제 27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37호(77.7.9)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8

서울특별시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광로		35	40	140	반포동 271-49	반포동 365-7	총연장: 6,600m 중 일부 구간지적승인

제 617.2 시 통 1977.8.17 37-17

○ 광장지적승인 조서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교통광장	104	반포동 363 일대	6.050 ㎡	
	106	반포동 226 일대	5.54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72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제41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광진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장

○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경인화물자동차점류장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2의 4월지	16,024.8	
변경	유통업무설비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2 일대	약 28,524	총 42,50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73호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한다.

출장소및 동청사위치변경교시

1977.8

서울특별시 일부 출장소및 동청사의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다 음

출장소및동명	위 치 면	경 내 용		이전일자
		이 전 전	이 전 후	
양서 출장소	영등포구 동촌동 산 2-14	영등포구 화곡동 1-103		77.8.16
동촌동사무소	영등포구 동촌동 397-6	영등포구 동촌동 산 2-14 (구 양서 출장소)		77.8.16

1905

37-18 제 617호 시 보 1977.8.1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장

가.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시장	마포구 성산동 35-30	369평	성산주택지상가시장
"	"	중구 충무로3가 60-1	584.2평	일신아케이트시장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다음과 같이 폐지 및 신설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장

○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형	복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	25 #	4,800 #	대발동	서울대앞광장	
변경	"	3	"	1,920 #	"	실험동 89번지	노선축조
신설	중로	3	12 #	3,000 #	신림동 56	서울대앞광장	
"	"	3	"	"	" 427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9.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2	148	15m	236m	답십리동 12-203	남십리동 19-19	전농동 북계도로신설

나.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규모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하수도	B=8m	390m	장안동 24-4	답십리동 19-19	전농천
"	"	B=5	370	답십리동 12-203	답십리동 21-8	"
"	"	B=5.75	1,008	영등포 5가 65	당산동 560	"
"	"	B=10.2	2,000	중곡동 137-13	중곡동 125-10	중곡천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37-20 제 617 호

시 보

1977.8.17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 도로결정 및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예지	소로	3		6	58	대홍동 6 번지	대홍동 6 번지	
신설	"	2		8	285	염리동 36-249	대홍동 4-3	
기정	"	4		4	36	송정동 50-6	송정동 50-7	
변경	"	4		4	36	"	"	위치변경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278 호

도시계획시설(수도)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77.7.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
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허가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조(77.3.10)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 171 호 (77.7.21)
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3. 관계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등록실 및 사업시행자인
(주) 위커힐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광장
동 산 12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수도) (워커힐 전용수도)

3. 사업시행면적 : 906 평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동 산 21번지
(주) 워커힐 대표이사
신 광 금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77.11

제 617 호

시 보

1977.8.17 37-21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성동구 광장동	산 12	임	906坪	(수) 위커힐대표 신광규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9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55호(77.7.28)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운동장(장구장)	관악구 신림동 10-5 외 31필지	9,506坪(2,876평)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8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6호(77.8.4)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
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7. 8. 16

서울특별시장

•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위	연장	시점	종점
신설	소로	3		6m	20m	미아 829-2	수유 482-16

※ 별첨: 도면도서와 같음 (도면 생략)

1907

37-22 제 617 호

시

보 1977.8.17

◎서울특별시고지제 281호

도시계획 사업(학교)
시행허가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117호(77.4.21)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 사업(학교) 시행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자 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제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7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중곡동 176-1 의 7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신설(국민학교)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35,888(10,858평)
진입도로 폭 10 · 연장 168
- 변경전 : 사업시행자 ·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성동구 행당동 산 18-2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배경순
변경후 : 사업시행자 ·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고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
-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당초 : 허가일로부터 4개월

- 연기(변경) : 허가일로부터 1년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권명세(별동없음)
- 사업승계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117호(77.4.21)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사항 및 조건내용 일체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지제 282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76.10.5)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 관제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8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홍제동 산 40 의 1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 사업시행면적 : 1,680 평

라.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주 일 이내			○ 준공년월일 - 77.11.30일 마.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번호	소재지	자번	지목	지적	소유권
1	서대문구홍제동	산1의40	임야	780평	학교법인 운영 학원
2	"	" 45 "	"	900 "	" " "
계				1,680 "	

첨도연생각

공 고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75.6.11)
로 고시된 구기동지내 하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속 편입
되는 토지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제
의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
조 및 동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
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잘 용할.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경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5.

서울특별시 장
총괄개요

1. 사업장위치 : 신영동 36 의 1 - 구기동
85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기동지내 하
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암거 ($B = 3.2$,
 $H = 2.2$) $L = 116$ 미터의 4종
도로 $B = 8$ 미터 ~ 12 미터 $L = 4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차수 및 준공예정 : 1977.6.13 ~
1977.8.23

37-24 제 617 호

시 보

1977.8.17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3 항의 규정에 의
한 판계인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2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165호(77.7.
16)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
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
였기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판계인에게 보인다.

3. 본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판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잘을 한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환지예정지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영동제2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30,098.8 평

다. 변경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230
이 5호 외 205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151호(77.7.5)
로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한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
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
에 의거 환지예정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
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조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와 강남구
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판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판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
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를 잘을 한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p>(환지예정지변경지정내역)</p> <p>가. 사업명 : 영동 제2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p> <p>나. 변경면적 : 63,470 평</p> <p>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65의 1호의 81필지</p>	<p>3. 사업의 규모 : 25,747</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착 공 : 77. 9. 1 준 공 : 77. 9. 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법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 인 주소, 성명 : 생략. 끝</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85 호</p> <p>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225호 (77.1.13)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도시가스 공장지대) 건설공사 구간내의 저축 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파에 비치하고 표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8. 16 서 울 특 별 시 장</p> <p><공람개요></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영등포구 염 창동 20, 목동 15-6 부근 (김포 토지 구획정리지구 546 구획).</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 사업</p>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87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2호 (77. 5. 18)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사회 인가된 도시계 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법 제 46조 제 3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둥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p> <p style="text-align: right;">1977. 8. 16 서 울 특 별 시 장</p>

37-26 제 617 호 시

보 1977. 8. 17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도봉구 월계동 811의 1의 17 블록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영광여중 상업고등학교 3. 허가년월일 : 서울시 고시 제 152호 (77. 5. 18) 4.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5-1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홍인옥 5. 시행면적 : 31,137 (㎡) (9,419 평)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77. 5. 18 나. 준공년월일 : 77. 6. 29 7. 준공도면 : 생략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경비과와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8. 16 서울특별시장
④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0호 (76. 12. 27)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지침 인가된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같은 법 제 46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10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경여자고등학교 3. 허가년월일 : 서울시 고시 제 350호 (76. 12. 27)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103-1 학교법인 선덕학원 이사장 이율성 5. 시행면적 : 4,200 평 방미터 6. 사업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77. 1. 26 나. 준공년월일 : 77. 5. 2 7.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 제189호

환경계획변경공람공고

1.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예정지(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
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
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첨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
달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
로 갈음합니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환경계획변경내역)

- 가. 사업명: 영동 제2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강남구 도곡동 125의

53호의 14필지

• 변경면적: 2,039.5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78호(72.3.6)
로 고시된 창전동 10-2 ~ 창전동
1150-2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
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농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의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37-28 제617호 시

보 1977. 8. 17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사업의 규모: 가. 폭: 20-38m 나. 연장: 880m
1977. 8. 17	4. 사업의 시행자: 마포구청
<공람개요>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7. 9. 5 ~ 77. 12. 31
1. 사업장위치: 마포구 창천동 10-2 ~ 창천동 150-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조서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로개설 (봉원천도로 개수공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순위	위 치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창천동 145-5	제	2	마포구 창천동 324	유 지 승
2	" 145-4	제	1	"	"
3	" 13-14	대	33	영등포구 노량진동 225-90	서 옹 찬
4	" 13-1	대	69	종로구 명륜동 1가 36-44	김 용 구
5	" 8-8	대	53	마포구 창천동 8-4	이 종 대
6	" 8-7	대	18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정 춘 삼
7	" 8-6	대	48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83	박희자외 1인
8	" 7-6	대	7	마포구 창천동 7-1	박 인 태
9	마포구 신수동 65-1	대	58	화성군 미도면 석고산 3-3	미 도 학 원
10	" 65-2	대	196	"	"
11	" 65-3	대	73	"	"
12	" 68-1	대	2	마포구 신수동 67-1	이 영 호

제 617 호 시 보 1977. 8. 17 37-29

순위	위 치	지목	자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3	마포구 신수동 68-5	대	40	마포구 흥운동 11-6	최 주 랑
14	# 68-8	대	6	마포구 신수동 67-1	이 영 호
15	# 68-3	대	1	"	"
16	# 68-19	대	6	"	"
17	# 103-1	전	3	충주시 충소동 87	이 한 총
18	마포구 구수동 56-2	전	6	종로구 돈암동 산 48-27	이 성숙 외 2인
19	마포구 신수동 66-7	대	43	마포구 신수동 66-1	방경길 외 4인
20	# 66-11	대	74	"	"
21	마포구 창전동 8-3	대	80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83	박희자 외 1인
계			819 평		

전 물 조 서

No	위 치	구 조	전 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창전동 13-14	연와조, 명육가 세멘부록크 세멘와즙	1층 4 2층 3 지하 3 4	창전동 13-14	서 용찬
2	# 8-4	세멘벽돌, 세멘와즙	1	창전동 8-4	이 종대
3	# 8-3	목조와즙	25	# 8-1	박희자
4	# 7-1	연와조, 세멘와즙	7	외장부가로동 331	전오주
계			47		

1911

37-30 제617호

시

보 1977. 8. 17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07 호 (76.8.28)
 로 고시된 창전동 5-2 ~ 창전동
 5-92 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
 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
 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
 산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8. 17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장위치 : 마포구 창전동 5-2 ~
 창전동 5-92 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개설 (서강
 아파트 ~ 동원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폭 : 15
 나. 연장 : 324
4. 사업의 시행자 : 마포구청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 : 77. 9. 5
 ~ 7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토지조서

No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창전동 2-108	대	17	창전동 2-108	이봉기
2	2-135	"	21	" 2-24	정호희
3	2-134	"	51	노교산동 57-49	권혁임
4	2-123	"	3	북아현동 105	임승일
5	2-133	"	5	창전동 2-23	정영표

제 617 호

시

보

1917. 8. 17. 3:00

No	위 치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	창건동 2-132	전	25	창건동 2-133	신상식
7	" 2-56	"	22	40-10	고재길
8	" 2-131	대	7	2-114	서수자
9	" 2-130	"	0.9	2-95	전규선
10	" 2-129	"	4	2-5	장원모
11	" 2-128	"	0.9	연희동 30-4	박하델
12	" 2-101	전	6	창건동 2-5	장원모
13	" 2-127	대	4	2-21	구명렬
14	" 2-55	도	21	"	"
15	" 2-100	전	4	산1-4	김형준
16	" 2-54	"	761.	산1-4	김해김씨충장공
17	" 3-5	대	225	금호동 4가 1134	박영구
18	" 3-8	"	123	"	"
19	" 5-10	"	299	충정로 3가 31-7	정정승
20	" 5-128	전	295	창건동 28-1	임경우

전 률 조 서

No	위 치	구 조	전 평	소 용 자	
				주 소	성 명
1	창건동 2-108	연희조세밀화점	1층10	창건동 2-108	이봉희
2	2-104	"	19.88	2-104	정호희
3	2-123	연희조명유체	1 4/3 2 4/3	2-123	정봉진
4	2-105	연희조세밀화점	23.56	노고산동 57-49	전석임

1912

37-32 제 617 호 시

보 1977.8.17

번호	위치	구조	전형	소유자	
				주소	성명
5	창전동 2-113	연화조명 옥개	12	창전동 2-113	신상식
6	2-114	"	2	" 2-114	서수자
7	창전동 산 1-4	목조와집	17	" 2-54	김정화
8	3-71	세멘스라브	1	" 3-71	김영옥
9	5-12	"	1	원효로 1가 86	장영석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3 호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1.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 구내 환지에 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 도서는 도시경비국 구획정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송달 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암구정동 165번
지의 105필지
다. 변경면적 : 38,733.4평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37 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신조 공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 . . .

종로구청장 노건일

1. 공인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종로구 출납명령관인
2. 서체 및 규격 : 한글전서체 (가로)
2.0cm 정방형
3. 사용일자 4. 공인
1977.8.1 모형



제 617 호 시 보 1977.8.1. 37-

1. 품인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출납공무원인

2. 서체 및 국적 : 한글전서체 (가로) 1.8cm 정방형

3. 사용개시일자 : 1977.8.1

4. 품인모형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372 호

공 인 신 조 공 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구 출납명령관인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구 출납공무원인을 조각하고 1977년 8월 1일부터 사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7. .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정 장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구 출납명령관인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구 출납공무원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88 호

직 인 신 조 공 고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77년 7월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정 장 9

1913

37-34·제 617 호 시

보 1977. 8. 17

1. 공인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성북구출납명령판인

2. 공인사용일자 : 1977. 8. 1

3. 공인의 모형



1. 공인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성북구출납공무원 (K)

2. 공인사용일자 : 1977. 8. 1

3. 공인의 모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31 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공인(신조사용)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서대문구회계 관제공인을 신조 사용케 되었기 공고함.

1977. 8. 1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용개시일자 : 77. 8. 1 00:00

2. 인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서대문구출납명령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서대문구출납
공무원



제 617 호 시

보 1977.8.17 37-35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 26 호

부정시험 행위자명단

당시가 77.7.31 시행한 제5회 5
급율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다음 자들은 부정행위자로 처벌
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하고 시험시행일로
부터 향후 5년간 (1977.7.31-1982.
7.30)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사업
시험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
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 하
음을 공고한다.

1977. 8. 1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응시자격 정지처분자

시험일시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본적	주소	비고
77.7.31 11:00- 12:40	5급행정 S 688	52.1.19 (520119- 1896318)	김민식	경남 창녕군 창녕읍 되천 리 389	서울 성동구 성내동 6번지	부정 지 달 전
"	5급행정 S 696	49.11.14 (491114- 1787615)	전원찬	기북 영천군 급호읍 교대 동 351	서울 강남구 반포동 50-2	"

사령

재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 1977. 7. 14

보건예방과 지방간호과 유복환
원에 대하여 그 직을 면함.
총로구 지방행정 조완희

증 구 지방행정 김용수
재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안의수
재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1914

37-36 제 617 호

시

보

1977. 8. 17

동대문보건소	지방행정사	조규철	◎ 1977. 8. 1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보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사	박찬갑	심판총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사	박전영	서울운동장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자방행정관	정만호
중 구	지방행정사	박세환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울운동장장에	보함.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기	윤수홍	보건연구소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연 구	김종석
총 무 과	지방행정사	김관희	노동청 전출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 1977. 8. 3
		법상제회	별정직
		보좌관	3월상당
			안영길
			지방사무관에 임함.
		8호봉을	급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전기정
			서인원
		전설부	전출을 명함.

정 정 사 항		
	정	정
서보 609호 P62-4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부칙 중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정원 중 승진·전보 등 는 직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아조례 시행 당시의 현원 중 승진·전보 등 는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을 초과하는 정급의 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 또는 서 로부터 18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능직 무원은 고용원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이 결원 될 때 까지로 한다.”
P62-3	제 4 조 중 “지방의무기 감”	“지방의무부기 감”
P62-7	별표 2 중 “영등포병원과 동부병원 사이클” 을	삭제
P62-12	7 총 4 을 “도시개발자로 요원 2”	도시개발자로 요원 1”
P62-16	1 총 “차량기 술원 2”	“사방기 술원 2”
	.	